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준공 후 30년 이상이 경과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종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실시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553호, 2024. 12. 3. 공포, 2025. 12. 4. 시행)됨에 따라,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도 제3종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정기안전점검”을 “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)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종시 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 는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 단을 완료한 때, 제3종시설물의 경우에는 <u>정기안전점검</u> 을 완료 한 때에 안전등급을 지정한다. ② (생략)	제12조(안전등급의 지정 및 변경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안전점검 및 정밀안전</u> <u>진단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